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88
----------	-------

발의연월일 : 2025. 11. 19.

발 의 자 : 한민수 · 박상혁 · 김기표
이연희 · 김우영 · 임오경
이정문 · 이해식 · 박균택
송옥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 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 SNS 마켓과 같은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부가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그 이행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행 실적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 22조의12 신설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8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2조의12제3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제출

제22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12(통신판매등 제공 부가통신사업자의 의무) ①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의 부가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이 조에서 “통신판매등”이라 한다)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이하 이 조에서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라 한다)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 또는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 중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의 이행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는 매년 통신판매등의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의 이행 현황 및 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제출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제5항에 제2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5. 제22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 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22조 의7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해 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 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u><신 설></u> 3. · 4. (생 략) ② ~ ④ (생 략) <u><신 설></u>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22조의12제3항에 따른 이 <u>행실적의 제출</u> 4. ·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22조의12(통신판매등 제공 부</u> <u>가통신사업자의 의무) ① 부가</u> <u>통신사업자는 자신의 부가통신</u> <u>역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u> <u>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u> <u>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u> <u>신판매 또는 같은 조 제4호에</u> <u>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이 조</u> <u>에서 “통신판매등”이라 한다)가</u>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이하 이 조에서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라 한다)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 또는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 중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의 이행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는 매년 통신판매등의 거래과정에서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의 이행 현황 및 계획에 관

제104조(과태료)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4호의8부터 제4호의21까지, 제8호,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 2의4. (생략)

<신 설>

3. ~ 17. (생략)

⑥ (생략)

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
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제출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1. ~ 2의4. (현행과 같음)

2의5. 제22조의12제4항을 위반
하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아니
한 자

3. ~ 17.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